충남지역문화연구소 규정(4-2-13)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(이하 "본 연구소"이라 한다)라 칭하며,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- 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충남 지역의 역사·문화·경제·교육 등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를 연구, 발전, 교육시키는데 있다.
- 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.
 - ① 충남 지역의 문화 콘텐츠 구축 관련 사업
 - ② 지역 문화 계발 및 지역인재 양성 관련 사업
 - ③ 지역 고유 역사와 문화의 계승・발전 관련 사업
 - ④ 초·중·고의 현장학습과 일반인의 지역 문화 발전 사업
 - ⑤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- 제4조(조직) 본 연구소에는 연구부 그리고 기획부를 둔다.
- 제5조(임원 및 임기) ① 본 연구소에 소장 1인, 연구부장 1인, 기획부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,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및 각 부에는 연구원 또는 위촉 연구원을 둔다.
 - ②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연구부장은 연구소의 연구기획 업무를 총괄하며,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다.
 - ④ 기획부장은 대외협력과 홍보업무와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업무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,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다.
 -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연 구 원

- **제6조(연구원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임 연구원,연구원, 위촉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소는 관련 전공의 박사과정 중이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

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③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- 제7조(구성 및 회의)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5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학교 지원,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1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